

영등포구의회  
제209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 
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이 용 주 의원 발의】



2018. 9. 14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4호로 2018년 8월 31일 이용주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취약계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개인보호 장비 및 물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 등 규정(안 제3조)

다.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규정(안 제4조)

라. 지원대상 규정(안 제5조)

마. 재활용품 수집인에 지원 사항 규정(안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 반영

다. 입법예고(2018. 8. 24. ~ 8. 30.)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됨.
- 주요 제정 내용은
  - 안 제1조~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3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
  - 안 제4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

-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6조~제7조까지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2017. 12월 현재 우리구에서 현재 약 112명이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저소득층 및 노인들이 재활용품 수집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들에게 개인보호 장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통해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『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』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재활용가능자원"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(收去)된 물건과 부산물(副産物) 중 재사용·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[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(廢熱)을 포함하되,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]을 말한다.

### ■ 『장애인복지법』

**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** ①"장애인"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

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"신체적 장애"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

2. "정신적 장애"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
### ■ 『폐기물관리법』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

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## ■ 『지방자치법』

**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